

작성방법

-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-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, 신용카드·직불카드·기명식선불카드·기명식선불지급수단·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,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 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
 -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) 이하인 배우자
 -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,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)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) 이하인 사람
- 부양자녀 인원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직계비속(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하며, 동거입양자, 위탁아동, 재혼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의 인원을 말하며, 해당 하는 란에 “○” 표를 기재합니다.

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(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)로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.
- “① 내·외국인 구분”란: 내국인은 “1”, 외국인은 “9”로 표기합니다.
- “② 관계”란: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=0, 직계존속=1, 배우자의 직계존속=2, 배우자=3, 직계비속=4 로 표기합니다.
- “자료구분”란의 “국세청 자료”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→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→연말정산간소화)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, “그 밖의 자료”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(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)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“신용카드등 사용금액”란: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,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,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, ⑦, ⑧, ⑨란에서 차감하고 “⑪ 대중교통이용분” 중 “그 밖의 자료”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 - “⑥ 신용카드”란부터 “⑪ 대중교통이용분”란까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.
 - “⑥ 신용카드”란, “⑦ 직불·선불카드등”란, “⑨ 문화체육사용분”란, “⑩ 전통시장사용분”란 및 “⑪ 대중교통이용분”란: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(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) “소득공제대상금액”란 ⑨, ⑩, ⑪,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.
 - “⑧ 현금영수증”란: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(전통시장사용분·대중교통이용분·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제외합니다)을 적습니다.
- ⑧번 항목의 ■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-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“2.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“⑰-1 총급여”란: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)의 “⑳ 총급여”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“⑲ 공제한도액”란: 총급여 및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.

* 부양자녀 - 직계비속, 동거입양자, 위탁아동, 재혼자의 자녀 포함

기본공제 한도	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	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
부양자녀 없음	300만원	250만원
부양자녀 1인	350만원	275만원
부양자녀 2인 이상	400만원	300만원
- 문화체육사용분과 문화체육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,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.
- ㉒-2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,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.